■ 민족문화연구 제91호(2021.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75-130.
http://doi.org/10.17948/kcs.2021..91.75

【특집: 사전 편찬의 역사성과 특수성】

한국 무형문화재의 사전적 지식 제공의 현주소와 지향점*
—공공기관 웹아카이브를 중심으로—

김윤지(金允志)**

목 차

1. 들어가며
2. 법으로 본 한국 무형문화재의 이해
3. 한국 무형문화재의 사전적 지식 제공의 현주소
4. 한국 무형문화재의 사전적 지식 제공의 한계와 방향
5. 나가며

국문초록

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웹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한국 무형문화재 사전적 지식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한국무형문화재의 올바른 지식 제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현행 법령의 이해를 통해서 사전적 지식에 해당되는 정의, 범주, 분류, 방향성 등을 파악했는데, 문화재청 및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개정된 법령의 내용들을 적용하지 않은 채 무형문화재의 정의 및 기준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기본적인 설명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수치로 제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7-KFR-1230008).
** 세종시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시된 오류도 발견되었다. 개정된 법률과 제도를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정의 및 유형, 대상, 내용들을 신속하게 수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한계의 원인으로는 무형문화재 제도가 갖고 있는 독특한 역사성, 무형적 유산의 진화적 특성, 행정 업무 및 그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 시스템 등이 맞물리면서 초래된 결과라고 본다.

셋째, 이에 균형성, 통일성, 완결성, 연계성, 종합성을 갖춘 한국무형문화재의 대통합 지식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한국무형문화재 지식 제공은 적어도 공익성, 공개성, 규범성, 가치성이라는 공공성의 방향과 사전적 지식 제공의 본질인 정확성,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의 원리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중앙과 지자체가 서로 합심하여 가치성, 공익성, 공개성, 규범성을 지닌 한국무형문화재 대통합 아카이브댐 구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주제어: 한국무형문화재, 사전, 국가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아카이브.

1. 들어가며

21세기 전후로 유네스코가 인류무형문화유산 90종목을 발표함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의 국내외적인 관심이 제고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국내 무형문화재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 하나가, 2015년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대대적인 개정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정의 핵심은 무형문화재 지정의 기준을 '원형 보존'에서 '전형 보전'으로[1] 변경함으로써 유네스코 「무

1) [1] 원형 보존 중심의 문화재 보호법. 2015.3.27. 제정이전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2.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 :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하는 단체.

[2] 전형 보전 중심으로의 문화재 보호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 2015.3.27. 제정이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3호.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제16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 :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란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의 이행 의지를 들어내고 있다.[2)]

이러한 등재의 열기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북한 더 나아가 유럽[3)]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보다 합

2) 200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전문 중 가장 핵심적인 정의를 제시해보면, "대대로 전승되어 온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의 환경, 자연과의 상호작용, 역사에서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그들에게 정체감과 연속감을 제공함으로써 (…) 무형문화유산만을 고려한다"고 했다. 본 연구자는 이것을 한국 무형유산 발전사가 지닌 궁극적인 의미와 동일한 관점으로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즉 한국 무형적 예술의 뿌리는 하나이다. 시대별 특성과 역사적 배경 속에서 끝없는 전승의 성장을 거듭하면서 마디별의 다양한 모양의 가지로 뻗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전승의 지속적인 과정이 분명하고 그 속에서 끝없이 발전하여 오늘날까지 내려온 것을 전통예술 또는 무형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승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또는 변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본(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시대의 흐름과 역사적 배경 속에서 발전하는 전승의 변화까지를 수용한다는 전형(典型)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김윤지, 「한국무형문화재 관련 사전 편찬의 현황 및 방향」, 『민족문화연구』 8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 51면, 재인용. 이는 곧 무형유산 가치의 본질적인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부터 시행된 무형문화재 보호법은 유형문화재를 바라보는 원형 보전의 구조화된 행위 원리의 틀로만 무형문화재를 지정, 보호해왔던 것이다. 송준,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소고—전형의 개념을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17, 남도민속학회, 2008, 217면, 재인용. 즉 원형 보존으로 바라본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보호의 한계점 도출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 등재 조건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서 한국은 최근 들어 전형 보전 중심으로의 법 개정을 하게 된 것이다.

3)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는 것은, 세계적인 무형적 유산으로서의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것이며, 그것은 국가 자산의 헤게모니이자, 문화 및 관광 콘텐츠로서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보고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무형유산이 지닌 재생산의 특성들로 인해서 각 국가들의 등재 과정에서는 성급한 오류와 수 많은 혼선이 가중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각종 논문들인 노리코 아이카와-포레, 「우수성과 진정성 : 한국과 일본의 인간문화재 제도를 중심으로」, 『무형유산』 9, 국립민속박물관, 2014, 34면; 마크 제이콥스, 「브뢰젤과 버크가 주는 교훈,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패러다임에 내재된 암묵적 기준」, 『무형유산』 9, 국립민속박물관, 2014, 87면; 사라 사전트, 「고전마술(馬術)과 새로 등장한 공인된 무형문화유산담화의 위험성」, 『무형유산』 11, 국립민속박물관, 2016, 52면; 조린 네이링크, 「초다양성 시대의 무형문화유산: 변화의 길에 대한 연구」, 『무형유산』 12, 국립민속박물관, 2017, 195-198면; 올가비아로스톡키, 「거주하기 : 무형문화유산의 살아 있는 저장소로서 언어적 상호작용」, 『무형유산』 11, 국립민속박물관, 2017, 18면; 이푸・김상균・루오한마오, 「항저우 예술공예박물관 클러스터의 분쟁 해결 및 공동체 참여」, 『무형유산』 12, 국립민속박물관, 2017, 66면; Laurajane Smith & Gary Campbell, "The Tautology of "Intangible Values" and the Misrecogni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ritage&Society*, Vol.10, 2017, p.27; Sophia Labadi, "Intangible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ealistic Outcome or Wishful Thinking?", *Heritage&Society*, Vol.4, 2011, p.115; Harriet Deacon & Rieks Smeets, "Authenticity, Value and Community Involvement in Heritage Management under the World Heritage and Intangible Heritage Conventions", *Heritage&Society*, Vol.6, 2013, p.130 등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으로는 한국 무형문화재 지식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한국 무형문화재를 정확하게 알리며,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언택트 디지털 인디펜던트(Untact Digital Independent) 시대 속에서 국가 또한 공공재 및 공공기록물의 전자적 정리 관리를 강조[4]하고 있고, 문화의 디지털화, 콘텐츠화의 필요성으로 인해 개별 저작권의 제약을 덜 받고 있는 공공기관의 웹 지식 자원들의 검색 수는 증폭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웹자원, 웹아카이브에서 제공되는 한국 무형문화재 지식 내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않았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웹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무형문화재의 사전事典적 지식[6]의 체계화를 통한 한국 무형문화재 가치의 올바른 인식, 생산, 확대를 위하여 첫째,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법률을 통해서 한국 무형문화재의 목적, 정의, 분류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무형문화재는 근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지정, 관리, 보호, 작동되는 대상임과 동시에, 사전적 지식이 추구하는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등의 기본요소도 법과 궤를 같이[7]하고 있기 때문에 여

4) 1990년대 이후부터 아카이브 사업에 대한 국가의 관심은 매우 높았다. 무형문화유산의 경우는 1970년에 도입한 '기록 의무화 규정'등이 있기 때문에 인쇄 자료 등의 기록물도 많은 편이다. 그러나 그것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관리,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족하고, 분장을 받은 공무원들이 연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자료의 관리는 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특히 공공기록물법의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3.21.]

5) 무형문화재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현재까지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저널 중심의 선행연구는 대략 855건이며, 국가별 무형문화재 비교 연구, 무형문화재 법령 정책 행정 현황 등의 개선 방안 연구, 무형문화재의 활용 방안 연구, 인류무형문화재 등재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무형문화재 제도적 확립과 행정 관리에 대한 논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무형문화재 법제에 근거한 현재의 무형문화재 지식 제공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안하는 논문은 드물다고 본다.

6) 이것은 법적 보호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와 관련 내용들이 사전으로서의 기본적인 요소와 구성을 갖추면서 일반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지 정보를 의미하며, 본고의 주제적 개념이기도 하다.

7) 공공기록물법 제1장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

기서는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7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등을 살펴본다. 둘째, 그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재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의 웹아카이브를 통해서 무형문화재의 정의, 분류 등에 관한 사전적 지식 제공의 현주소를 진단해 본다. 셋째, 공공기관 웹아카이브를 통한 한국 무형문화재의 사전적 지식 제공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까지 모색한다.

가속화되어 가는 비대면의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이 글이 한국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전적 지식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 기관 및 관계자, 전공 연구자, 더 나아가 웹 지식 서비스를 찾는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 라인과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2. 법으로 본 한국 무형문화재의 이해

무형문화재는 근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지정, 관리, 보호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의 이해는 필수적이다. 특히 사전적 지식 형성에서 추구해야 하는 객관성, 사실성, 대표성, 신뢰성, 공정성 등의 요소들은 공공기록물법의 특성과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호법, 17개 시도별 조례 등을 통해서, 사전적 지식 형성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범주 체계 및 정의 내용 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무형문화재 보호법으로 본 한국 무형문화재

종전에는 문화재보호법 안에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모든 규정과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2015년 3월 27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48호, 약칭 '무형문화재법')이 제정되어 '무형문화재'에 관하여 별도의 독립한 법률을 갖게 되었다. 이 법률은 2020년 6월에 일부 개정되어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8]되고 있으며, 여기서는 현행 내용들을 중심으

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로 무형문화재의 전반적인 이해 및 정의, 분류 등을 살펴본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가장 큰 법률로서 총 11장, 10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한국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핵심 조항들은 주로 제1장, 제2장, 제4장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제1장 총칙은 제1조 목적[9], 제2조 정의, 제3조 원칙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제2조 정의에서는 문화재의 의미를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무형문화재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개념화했으며, 그 안에는 전통적 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전통적 생활 관습,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총 7가지 범주[10]로 두었다.

그리고 제2장 문화재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서는 국가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 그것을 매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2019년을 기점으로 문화재 교육 등의 내용등을 추가하기도 했다.

최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통해서 문화재는 국내뿐만 아니라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보존, 관리, 활용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은 현 시점의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범위를 지향하도록 했다. 2019년을 기점으로 문화재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실천의 의지가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화재보호법에서 정의한 무형문화재에 관해서는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로 규율하기 시작했고 현재 총

8) 문화재청 소관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결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법령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무형문화재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210&lsiSeq=219063#0000(2021.3.31. 검색).

9) 문화재 보호법 제1장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0) 문화재 보호법 제1장 제2조(정의)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10장 58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본 고와 연관된 조항들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2장 무형문화재 정책 수립 및 추진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장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제6장 시・도무형문화재 제32조(시・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 제9장 보칙(제49조 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 보호) 등[11]이 있다. 가장 먼저 법률로 본 무형문화재의 종목, 보유자, 단체의 정의 내용의 핵심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유지 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지식을 무형문화재로 두고 있는데 이것은 쉽게 '전형'을 의미하는 것이며 종목, 보유자, 단체 지정의 중요한 요소[12]로 작용하게 된다. 사실 2015년 3월 27일 제정 이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보유자 및 전수조교를 인정할 때 가장 중요시되는 선정 기준은 원형(圓形)을 보존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2015년 3월 27일 법 제정 이후 「무형문화재법 시행령」에서는 제16조[13]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 원형이 아닌 '전형(典型)'으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을 국가무형문화재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이것은 요컨대 유형문화재의 지정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원형 보존의 원칙에서 무형유산 또는 전통문화 가치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본本은 유지하되 전승과 발전의 과정에서 변용되는 것까지 보전하는 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전형'은 원형의 경직성에서 탈피하여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14]

결국 무형문화재법에서의 전형의 의미는 원형의 파격적인 훼손과 변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원형을 존중하면서도 전승되면서 발전적인 변

11)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본고 '[부록1] 문화재 보호법 內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주요 조항 모음'을 참고해 주길 바란다.
12)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제사한 내용들은 본고 '[부록2] 무형문화재 보호법 주요 조항 모음'을 참고해 주길 바란다.
13) 「무형문화재법 시행령」, 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seek/law.jsp&mn=NS_03_03_02(2021.3.31. 검색).
14) 김윤지,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가치의 재인식과 쟁점 모색」, 『문화와 융합』 38-3, 한국문화융합학회, 2016, 207면.

화 부분을 수용하되 여러 세대를 거쳐도 변화하지 말아야 하는 모범, 표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듯하다. 또한 여기서도 문화재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가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제2장 제8조에 명기[15] 하였다. 그리고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부분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시·도무형문화재는 관할 시·도의 위원회에서 지정, 관리가 별도 트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법에서는 무형문화재의 지식 재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무형문화재의 개별적인 국내외 특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신력이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무형문화재의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한 진보된 지식 또는 기술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식 재산 기본법에 따라 전승자의 지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6]는 균형점까지 법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해보면, 문화재 및 무형문화재법은 첫째 2000년 이후부터 무형문화재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실천의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둘째, 무형문화재 재생산의 방지, 무형문화재 진화적 발전 도모 등과 같은 다의적인 목적을 위해서 웹을 통한 지식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의 지정, 관리, 계획 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 부서인 문화재청과 시·도 무형문화재 간의 유대적인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2) 시도별 조례로 본 한국 무형문화재

한국의 무형문화재는 크게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로 나뉜다.

---

15)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제시한 내용들은 본고 '[부록2] 무형문화재 보호법 주요 조항 모음'을 참고해 주길 바란다.

16)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제시한 내용들은 본고 '[부록2] 무형문화재 보호법 주요 조항 모음'을 참고해 주길 바란다.

국가무형문화재라는 명칭은 2015년 무형문화재법 제정 이후에 변경된 명칭으로 그 이전에는 중요무형문화재로 불려지다가, 시・도무형문화재 명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국가무형문화재로 변경된다. 국가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지정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담당하고 있는 반면, 시・도무형문화재는 각 관할 시도의 담당 부서가 맡고 있고, 현재 총 17개의 지자체 관할 부서가 있으며 본 장에서는 시・도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지자체 조례 내용[17]을 중심으로 다룬다.

먼저 서울특별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의 정의와 범주를 따르고 있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서울시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으나,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의 항목과 내용이 단순한 편이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자체적인 조례 내용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울산광역시는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따르면서 전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다. 다른 시도에 비해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례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체계화된 곳은 바로 경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따르면서 자체적인 운영 관리 내용을 두고 있고, 더 나아가 별도의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관련 무형문화재 지식의 알고리즘을 두기도 했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국가의 중앙 법들을 준수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도 그러한 상황은 유사하다. 전라북도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다. 전라남도는 문화재보호 조례는 있으나, 무형문화재에 관한 조례는 없는 상태인데 이 같은 상황은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였다.

17)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제시한 내용들은 본고 '[부록3] 시・도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지자체 조례의 주요 조항 모음'을 참고해 주길 바란다.

경상북도와 세종시는 국가 중앙의 법들을 유사하게 따르고 있다. 제주도 및 인천광역시 역시 중앙의 법들을 따르고 있다.

시도별 시·도무형문화재의 조례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대부분 중앙의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법을 준거로 시·도무형문화재 조례 항목과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서울, 광주, 경기, 충청남도, 경상북도, 충북, 제주, 세종, 인천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도 서울, 광주, 경기, 충청남도, 경상북도, 충북의 경우는 최근에 개정된 무형문화재의 정의, 범주, 원칙에 대한 내용들을 웹상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둘째 무형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인 정의 및 범주, 원칙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 못한 곳도 있다.

3. 한국 무형문화재의 사전적 지식 제공의 현주소

공공기관의 웹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한국 무형문화재의 지식이라는 범위는 공공기관의 웹아카이브 또는 웹페이지상에서 제공되고 지식들, 공공기관에서 주관하여 생산된 연구 지원물 및 공연 결과물, 개인의 소유 및 저작물, 지적 재산권 및 공공기관으로 이관시켜 생산된 지식들을 다 포함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그 대상들 중에서도 한국 무형문화재의 사전적 지식들을 어떻게 디지털적인 웹에서 제공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중앙 담당부처인 문화재청과 국립무형유산원, 시도별 관할청의 홈페이지의 웹 아카이브[18]에서 제공되는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사전적 지식을 중심으로 법적인 가이드 라인과 함께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지를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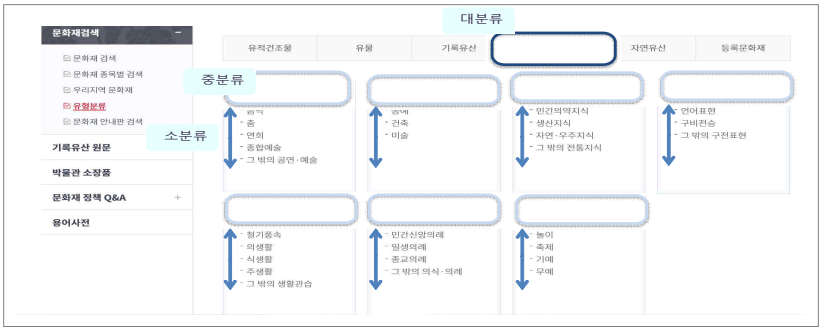
1) 문화재청·국립무형유산원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조사·연구 및 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61년 문교부 소속 문화재관리국으로 설치

18) 인터넷, 특히 웹 자원에서 역사적 가치 혹은 장기 보존의 가치를 가진 기록이나 문서들의 컬렉션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러한 기록이나 문서들을 보관하는 장소, 시설, 기관 등을 의미한다. 「아카이브」, 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C%B9%B4%EC%9D%B4%EB%B8%8C(2020.12.4. 검색).

된 뒤 1999년 문화관광부 산하의 문화재청으로 승격하였고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외청으로 변경되었다. 문화재청의 소속기관으로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그 산하의 전통문화교육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와 그 산하의 음봉분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경복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와 산하의 3개 지구관리소(동부・중부・서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그 산하의 5개 지방문화재연구소(경주・부여・가야・나주・중원) 및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등이 있다. 문화재청은 1998년부터 문화재 정보화 사업을 시작하여 문화재 전 분야에 걸친 조사연구와 각종 행정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DB화 해오다가, 그중에 무형유산 분야는 2013년 10월에 개관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먼저 문화재청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국가문화유산 포털 웹아카이브를 살펴보면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의 무형문화재 대상과 범위를 토대로 무형문화재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도식 1〉 문화재청 한국무형문화재 유형 분류 및 구성

〈도식 1〉을 보면 한국 무형문화재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나뉘어 있는데 이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중분류 및 소분류의 표제어 통일성과 범주의 균형성을 위한 수정이 필요하다. 종목별 무형문화재 지식 제공의 항목을 살펴보면, 분류-지정(일)-소재

지-QR코드/ 전승자 정보/ 스토리-종목 설명-내레이션/ 이미지/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종목명으로 지정이 된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는 어떠한 구성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소리를 예로 살펴보니, 판소리는 국가무형문화재 1개와 각 시·도무형문화재 30여 개의 판소리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먼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는 전통공연예술 〉 음악 〉 판소리로 범주화되어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제1호 남도 판소리 경우는 전통공연예술 〉 종합예술에 들어가 있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종목에 대한 내용도 없거나, 내용 구성도 차이가 있으며, 대분류의 오류도 보인다.



〈도식 2〉 시·도무형문화재 종목 지식 제공의 현황

종목별 내용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는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광주광역시 판소리 종목의 내용 설명에서는 인물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종목별 내용의 설명이 전반적으로 소략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51호 그 밖의 공연예술 〉 전통

군영무예의 경우는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한국 무형문화재 지식 정보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청의 웹아카이브의 현황은 첫째, 법제에서 제공하는 유형별 분류의 제시가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못한 상태이며, 둘째,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 지식 제공의 항목, 내용, 범주화의 통일성이 요구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각 시도별 무형문화재에 대한 내용 설명 제시가 매우 부족한 편이다. 문화재청 웹아카이브가 국가 및 시・도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정 안내, 종목별 설명, 전승 정보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룬다면 국립무형유산원의 경우는 무형문화재 지식 제공의 내용과 방향이 조금 다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후손에 전승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무형유산 복합행정기관이다.[19] 무형유산의 조사연구, 기록화, 공연, 전시, 교육, 아카이브 구축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중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아카이브는 해당 기관의 주된 영역[20]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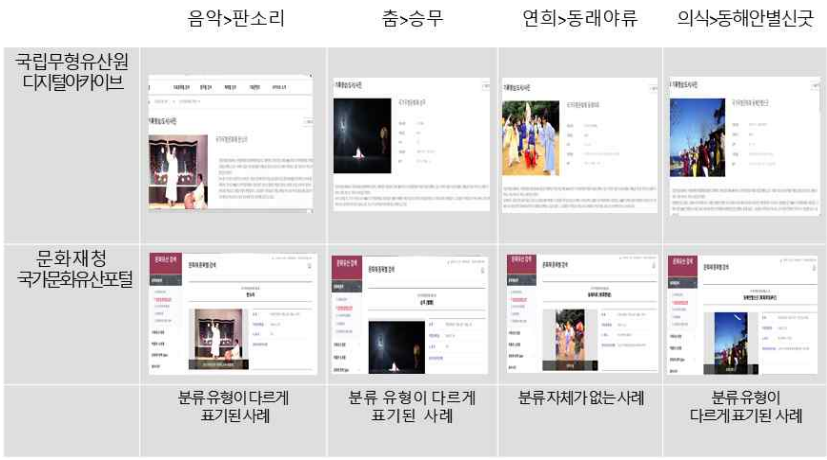
이 기관의 대표적인 웹아카이브는 '무형유산 디지털 자료 저장소'로서, 여기에는 국가문화유산 포털의 지식 정보의 장르와는 차별화되어 있는 시각적, 공연적, 인물적 중심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대상 또한 국가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만 다루고 있다. 또한 국가문화유산 포털과도 연동되어서 무형문화재의 지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다만, 자체적인 무형유산 디지털 자료 저장소에서 제작한 무형문화재의 정보와 연동되어 제공되는 문화재청 웹아카이브인 국가문화유산 포털의 내용이 일괄적이지 못하고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유형분류를 보면, 예를 들어 승무의 경우는 국립무형유산원의 무형유산 디지털 저장소에서는 '전통적 공연예술' 〉 승무로 범주화하고 있고, 연동된 국가문화유산포털에는 '전통 공연・예술 〉 춤으로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은 판소리도 마찬가지이다. 동해안

19) 「국립무형유산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34767&cid=40942&categoryId=38813(2020.12.14. 검색).

20) 이재필, 「국립무형유산원의 아카이브 현황과 향후 정책방안」, 『무형유산』 1, 국립무형유산원, 2017, 7면 재인용

별신굿의 유형범주화에 있어서도 저장소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 민간신앙의례로, 연동된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는 의례·의식 〉 민간신앙의례로 되어 있다. 연희 부분의 동래야류의 경우는 범주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도식 3〉 무형문화재 분류 지식 제공의 현황 [문화재청 vs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재청 소속인 국립무형유산원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사실 기록적인 문서 정보뿐만 아니라, 영상, 매체, 각종 관련 자료까지 저장하는 다채로운 형식의 아카이브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만 법제의 유형 범주화를 적용하고 있는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의 국가무형문화재 분류 범주화를 참고하여 통일성 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웹 페이지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며, 오류가 있는 지식을 인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분류체계와 범주 적용이 필요하다.

국가 및 시·도무형문화재의 사전적 지식 정보를 주관하고 있는 행정 기관은 문화재청이며, 이곳에서는 최근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무형문화재의 정의 및 분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의적절하게 지식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국가무형문화재에 한정되어 있으며, 시도별

관할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도무형문화재에 관한 지식 제공은 거의 휴면 상태라고 할 만큼 일관된 분류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고, 내용 제시도 되어 있지 않다. 대신 그 공란은 시도 관할 담당 부서의 이름과 연락처가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재청 산하 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의 상황도 그리 다르지는 않다. 종목별 제시 항목과 내용의 성격, 문화재청과 상이한 유형분류 체계 등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다. 문화재청과 국립무형유산원의 웹아카이브는 연동으로 동일한 자료를 공유하는 관계인지, 문화재청이 국립무형유산원의 자료를 포함한 더 큰 아카이브의 주체인지 아니면 국립무형유산원이 무형문화유산에 관해서는 문화재청의 자료를 다 포함하는 관계인지 구분이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무형문화재 아카이브 관리 및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문화재청과 국립무형유산원 간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지방자치단체 관할청의 웹아카이브

먼저 서울특별시는 53개 종목의 무형문화재를 지정해 두었고, 서울시 홈페이지 웹페이지 메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울무형문화재 홈페이지(http://www.seoulmaster.co.kr/)를 통하여 웹아카이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정현황, 지정 절차 및 관련 자료, 관련 법령, 기능 종목 및 보유자, 예능 종목 및 보유자, 전수 교육 조교 명단, 기록 영상의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데,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 기준 및 분류, 정의에 대한 부분은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각 항목의 내용은 통일성이 없는 내용 구성과 간략한 소개만이 제공되는 상태이다. 즉 법률적인 규정 및 정량적인 수치 정도의 소략적인 지식만을 아카이빙하고 있는 수준이다.

부산의 경우는 총 25개의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했으며,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유형문화재에 대한 소개만이 있고, 별도의 무형문화재 아카이브 및 그에 따른 알고리즘 구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해당 지역의 문

화재를 알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의 웹아카이브를 이용하거나, 부산전통예술관(www.btac.c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무형문화재 지식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다만 현행 법률에서 제시하는 정의 및 분류는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은 대구 및 대전, 광주광역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먼저 대구의 경우는 현재 17개의 무형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에 관한 지식 정보는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지만, 그 내용 또한 소략하거나 부재한 상황이다. 대전 또한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 웹아카이브를 통해서만 해당 지역 24개의 시·도무형문화재 지식 정보를 접할 수 있다. 20개의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있는 광주 광역시도 중앙부서인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 포털 웹아카이브를 통해서 해당 종목의 지식을 알 수 있지만, 그 내용이 거의 없는 부실한 상태이다. 다만 광주광역시는 관할 시·도무형문화재에 관한 별도의 홈페이지인 서구문화원(http://www.gjsgcc.or.kr)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행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무형문화재 종목과 지식 정보로 내용을 보완하면 좋을 듯하다.

위에 서술한 지역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곳이 울산광역시인데, 관할 홈페이지 아카이브를 통해서 문화재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울산은 6개의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했으며, 위 그림처럼 정량적 수치 및 종목, 보유자 및 단체에 대한 정보까지 일목요연하게 제시했고, '문화재청 문화재 현황 바로가기'로 연동시켜 문화재청 정보도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정량적 수치, 데이터 제공만 있을 뿐, 사전적 지식 정보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미지 1〉 울산광역시 시·도무형문화재의 웹아카이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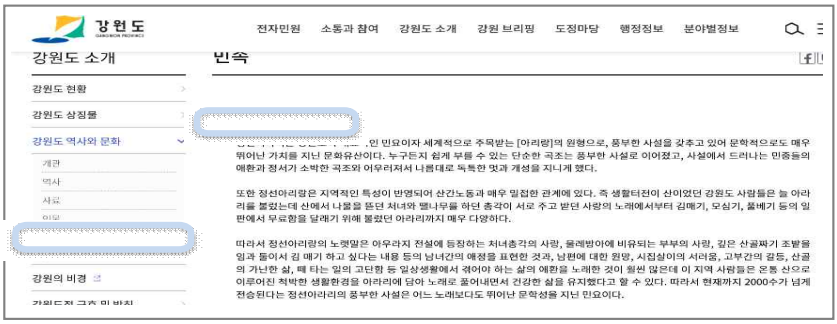
타 지역에 비해, 조례에서 경기도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는 시·도무형문화재 웹아카이브 또한 '문화유산자료실'(https://ebook.gg.go.kr/home/list.php?code=17)이라는 별도의 웹아카이브를 갖추고 문화재 지식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시·도무형문화재에 관한 정보의 기재 여부가 불명확하여 문화재청을 통해서 경기도 시·도무형문화재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66개 종목의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있는데 그 분류 체계가 특이하여([예시] 경기도 무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제8호 〉 '승무, 살풀이춤') 분류 체계의 정비가 요구되는 바이다.

충청남도는 총 55개의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했고, 관할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있는 '충남 관광 관련 사이트'(https://tour.chungnam.go.kr/_prog/cultural/index.php)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시·도무형문화재 정보를 맥락적으로 찾을 수 있다. 다만, 현재도 중요무형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정이 요구되고, 분류 체계에 있어서도 분류 범위의 크기가 타 지역과는 다르게 적용되어 있어 이 또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제56-1호 앉은굿(태안설위설경), 제56-2호 앉은굿(내포앉은굿)으로 분류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해당 도청 홈페이지의 통계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시·도무형문화재 지정 수만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지역의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전적 지식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 웹아카이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현재 이 지역은 27개의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했지만, 여기서도 이미지 및 지정 정보만 제공할 뿐, 구체적인 내용 및 안내에 대한 사전적 지식은 없다.

강원도는 해당 도청 홈페이지 내의 강원도 소개라는 웹아카이브를 통해서 31개의 시·도무형문화재의 지식들을 제공하고 있다. 종목별 내용의 설명 및 전승자들의 음원, 기타 정보 등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로서의 기본 정보는 생략되어 있고, 분류 체계 또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알고리즘의 접근성 또한 쉽지 않다. 그러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에서 제공되고 있는 강원도 시·도무형문화재의 지식 정보는 현행 법률의 분류 체계를 적용([예] 강원문화재 / 무형문화재 제31호 속초사자놀이 / 전통 공연·예술 / 연희)하고 있으며 종목에 대한 설명 또한 상세하게 기재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지 2〉 강원도 시·도무형문화재의 웹아카이브 현황

전라북도는 관할 홈페이지에서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과 연동시켜 전북 문화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재청 지식 제공을 통해서 본 이 지역은 현재 80개의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있다. 유형분류를 보면 중앙과

는 다르게 유형 범주가 다소 다른 양상([대분류] 무형문화재 〉 [중분류] 유형별 〉 [하분류] 종목명 [예]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제2-2호 판소리(심청가))을 보인다. 참고로 이 지역은 별도의 사설 기관인 무형문화재연합회 홈페이지(http://www.jeonmoyeon.com/sub1/s1.htm)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물 중심의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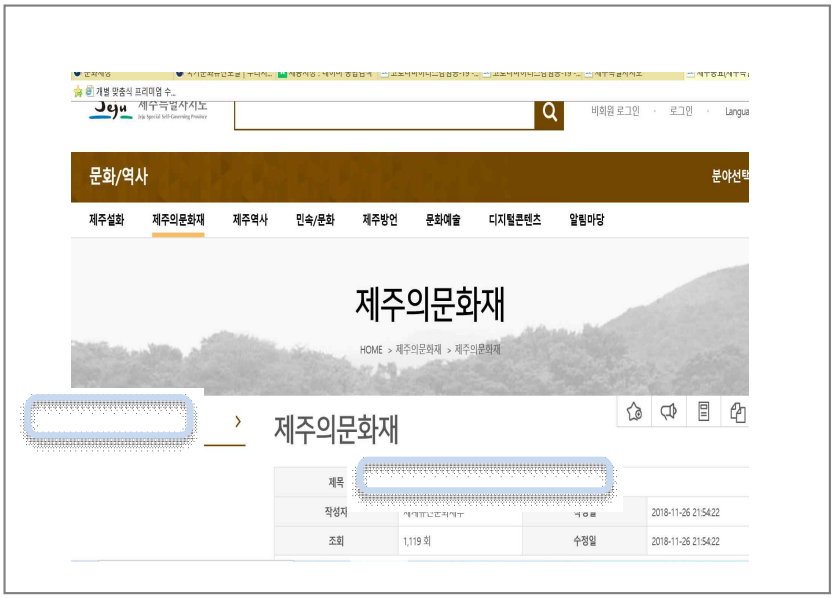
전라남도는 관할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 무형문화재 지식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의 웹아카이브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47개 시・도무형문화재 지식을 접할 수 있지만, 그 내용 또한 부재하거나 소략적이다. 시・도무형문화재에 대한 관할 부서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분류 체계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이다([대분류] 무형문화재 〉 [중분류] 유형별 〉 [하분류] 종목명 [예]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제1호 거문도뱃노래).

경상북도는 47개의 시・도무형문화재가 지정되어 있고, 해당 도청 홈페이지에는 해당 무형문화재의 정량적 정보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의 문화재 관련 사이트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다. 문화재청 웹아카이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지식 또한 현행 법률의 분류 체계를 적용((예) 무형문화재 / 전통 놀이・무예 / 놀이 〉 무형문화재 제3호 〉 영덕별신굿)하여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해당 도청 홈페이지에서 시・도무형문화재의 정보가 '경상남도 문화재 DB' 아카이브로 잘 제공되고 있다. 현재 경남은 33개의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있는데 분류 및 제시의 양상들은 초창기의 분류 양상(경상남도 무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제30호〉 거창 일소리)을 띠고 있다.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화재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중요무형문화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1건의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한 상태이다. 아직 시・도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행정이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문화재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연결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형문화재 지식 정보를 양호하게 제공하는 편이다. 현재 제주도는 22개의 무형문화재를 지정했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라는 용어 사용과 유형 분류(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제16호 〉 제주농요)에 있어서는 현행의 법률적 범주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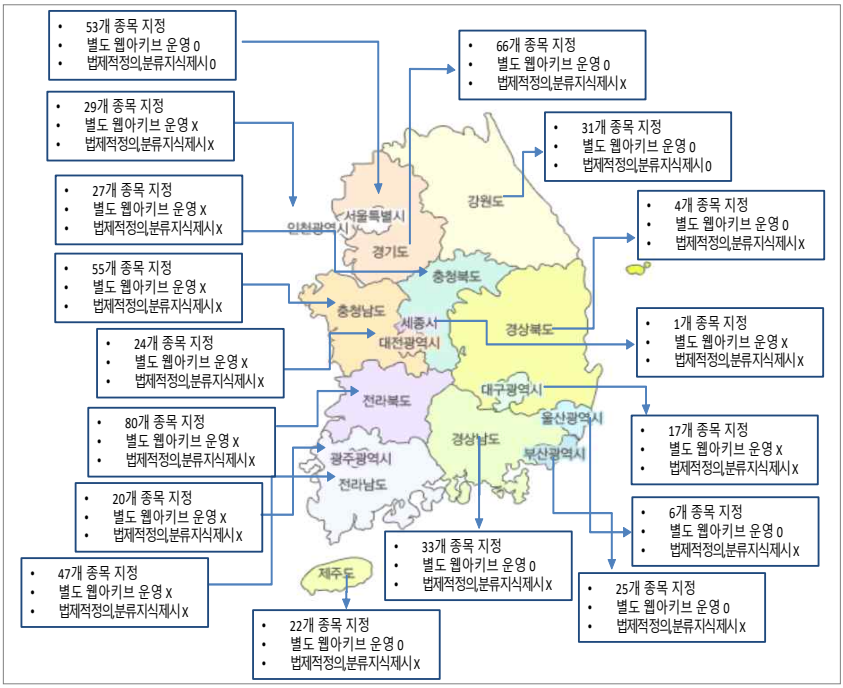


〈이미지 3〉 제주도 시·도무형문화재의 웹아카이브 현황

인천광역시는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과의 연동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문화재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까지 29개의 시·도무형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다. 분류(무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제1호 〉 삼현육각)에 있어서는 현재의 법률적 범주 내용을 반영하지는 못한 듯하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창설하고,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culture/CU030101)를 구축했는데 현재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자세한 정보, 분류, 내용은 부재한 상황인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향후 해당 지역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식 체계 및 교육 실천의 활성화가 보

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듯하다.

일련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도식화해 보면 아래와 같다.



〈도식 4〉 지자체별 시·도무형문화재 지식제공의 현주소

4. 한국 무형문화재의 사전적 지식 제공의 한계와 방향

한국 무형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은 문화재청이며, 문화재청에서 수집하거나, 생산된 무형문화재의 지식들을 DB화하고 웹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국가문화유산 포털인 것이다. 현행의 법제적 정의 및 분류 내용을 실시간 웹으로 반영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국가무형문화재에 국한되었고, 종목별 내용에 있어서도 항목과 전개 형식의 통일성은 많이 부족해 보인다. 특히 시·도무형문화재의 경우는 해당 지역의 관할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법제적 정의 및 분류 내용을 비롯하여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또한 소략적이거나 부재한 경우가 많다. 지자체별 시·도무형문화재 사전적 지식의 제공의 현황과 한계를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본다.

〈표 1〉 지자체별 시·도무형문화재 사전적 지식의 제공의 현황과 한계

	단독 아카이브	문화재청연동 아카이브	문화재 조례유무	무형문화재 조례유무	정의 적용	범주유형 적용
서울	○	○	○	○	○	○
부산	○	○	○	○	×	×
대구	×	○	○	○	×	×
대전	×	○	○	○	×	×
광주	○	○	○	○	×	×
울산	○	○	○	○	○	○
경기	○	○	○	○	○	○
충남	○	×	○	×	×	×
충북	×	×	○	×	×	×
강원	×	×	○	×	×	×
전북	○	×	○	○	×	×
전남	×	×	○	×	×	×
경북	○	×	○	○	○	○
경남	○	○	○	○	×	×
세종	○	○	○	○	×	×
제주	○	○	○	○	×	×
인천	○	○	○	○	×	×

위 〈표1〉에서 단독 아카이브는 해당 지역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식 정보를 자체 구축한 웹 아카이브를 의미한다. 대부분은 시도 관할 홈페이지 안에서 제공되지만, 부산, 광주,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사설 단체에 의해서 운영되는 웹 아카이브였다. 문화재청의 웹 아카이브인 국가문화유산 포털과의 연동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충남, 충북, 강원도, 전북, 전남, 경북 지역은 자체적인 시·도무형문화재의 지식 구축이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국가문화유산 포털과의 연동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듯하다. 문화재 보호 조례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웹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으나, 2015년 이후 일부 개정된 무형문화재의 정의 및 분

류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하지 못한 지역이 많은 편이다. 또한 지역별마다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지식에 대한 수집, 관리, 제공하는 스타일이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중앙 부서인 문화재청과 국립무형유산원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무형문화재 지식 제공 시스템 구축의 통일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해 보인다. 통일성, 적합성, 객관성, 균질성 등을 고려한 한국 무형문화재 유형분류 작업이 필요하고, 지식 제공 항목과 내용의 대대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한국 무형문화재 지식 제공이 불완전하고, 불일치하며, 정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본 연구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첫째 무형문화재 제도의 역사성이다. 한국은 6·25전쟁 이후, 민족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일환으로서 1960년대 문화재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고,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197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인 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 제도를 실시하였다. 사람에게 인간문화재라는 제도적 시스템을 적용하다 보니 전체적인 제도의 맥락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보다는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형태의 제도적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결국 전체 큰 맥락으로서의 제도권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개별적이면서도 급작스럽게 제도를 생성하고 실행할 수밖에 없는 결과들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유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및 관점 중심으로 무형문화재 정책의 적용, 무형문화재에 대한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계획 부재 등으로 관련 지식 수집 및 제공에 있어서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둘째, 사람 대 사람으로 전해지는 무형적 유산들의 진화적 특성이다. 유형문화재와는 다르게 무형적 유산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꾀하게 되고, 결국 해당 유산들은 기존의 유형과 범주의 프레임 속에 규정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로 우리 곁에서 존립한다. 시대별로 적합한 분류 체계를 설계하여 적용화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셋째, 담당자의 잦은 이동, 업무 변경이다.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업무와 지식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그것의 아카이빙 작업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작업을 공공기관에서는 업

무 순환에 따라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변경되다 보니, 일관성, 체계성, 연계성을 갖춘 무형문화재 지식의 아카이브 구축이 힘든 것이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만은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업무 순환 방식 대신 전담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모두 한국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공공재로서의 한국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식을 어떤 기준, 어떤 방식, 어떤 내용으로 제시해야 할지 사전적이고 준비된 설계가 없었던 것이다. 무형문화재 제도 실행의 초창기인 1970년대에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식 구축과 제공에 대한 인식 또한 거의 부재한 상황이었고, 관장하는 행정 부서 및 담당자들 또한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부서 간, 사람 간의 공유와 연계의 인식도, 실천 의지도 부족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오늘날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한국무형문화재의 사전적 지식은 누락되거나, 편중되거나, 오류가 있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 한국 무형문화재 지식 이해의 혼선과 잘못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이 같은 우려사항은 디지털 시대와 맞물려 더욱 급속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무형문화재 지식 대통합 디지털 시스템 구축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언택트 디지털 인디펜던트 시대에 부합되는 디지털 모듈형의 지식 DB화를 통한 한국 무형문화재 지식 댐의 구축 정비가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한국 무형문화재 및 관련된 법, 공공기관의 지식 제공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통해서 웹아카이브의 목적, 대상, 의미, 설계에 대한 재인식과 재조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재청-시도별 관할청, 국가무형문화재-시・도무형문화재, 문화재청-국립무형유산원 등과 같은 행정 부서들 간의 소통과 공유를 통해서 한국 무형문화재의 사전적 지식의 자료들을 공유하여 공적 지식으로서의 제공 시스템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5. 나가며

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웹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한국 무형문화재 사전적 지식의 현주소를 아래와 같이 진단하여 한국 무형문화재 가치의 올바른 지식 제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먼저, 한국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현행 법령의 이해를 통해서 사전적 지식에 해당되는 정의, 범주, 분류, 방향성 등을 파악했는데, 문화재청 및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개정된 법령의 내용들을 적용하지 않은 채 무형문화재의 정의 및 기준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기본적인 설명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수치로 제시된 오류도 발견되었다. 개정된 법률과 제도를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정의 및 유형, 대상, 내용들을 신속하게 수정해야 할 것이다. 무형문화재를 단순히 행정적인 관리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민족정체성의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그에 관한 지식 정보를 체계화하고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무형문화재 사전적 지식 제공의 불균형, 불일치, 불완정성의 문제들은 무형문화재 제도가 갖고 있는 독특한 역사성, 무형적 유산 또는 무형적 예술 및 문화가 지닌 진화적인 특성, 행정 업무 및 그 담당자들의 잦은 순환이라는 행정 시스템 등이 맞물리면서 초래된 결과라고 본다. 이에 균형성, 통일성, 완결성, 연계성, 종합성을 갖춘 한국무형문화재의 대통합 지식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행정과 사람(조직)을 일반 행정과 달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필요성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시사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보호법 제49조(무형문화재의 지식 재산 보호)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국내외 특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관한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공신력을 지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무형문화재를 보호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재로서의 한국 무형문화재 지식 제공은 적어도 공익성, 공개성, 규범성, 가치성이라는 공공성의 방향[21]과 사전적 지식 제공의

본질인 정확성, 명확성,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의 원리를 준수하여 아카이빙-디지타이징-컬렉션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한 지식 제공의 프로세스로 완성된 아카이브 댐으로 지향해야 할 것이다. 중앙은 지자체에게, 지자체는 중앙에 미루는 식으로 우왕좌왕하여 결국에는 방치하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 합심하여 가치성, 공익성, 공개성, 규범성을 지닌 대통합의 DB 구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1) 김윤지, 「공공성 관점으로 본 국가무형문화재 제도의 미래지향적 관점과 방향」, 『문화와 융합』 42-8,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841면 재인용.

[부록1] 문화재 보호법 內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주요 조항 모음

구 분		조항 및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3. 27.〉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문화재교육"이란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제3조(문화재보호의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부록2] 무형문화재 보호법 주요 조항 모음

구 분		조항 및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2020. 6. 9.〉 1. "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 제1항 또는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 제1항 또는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인간문화재"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를 통칭하여 말한다.
	제3조 (기본 원칙)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
제2장 무형문화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재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무형문화재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무형문화재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전승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 · 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 · 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문화재의 기록 ③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시·도 무형문화재	제31조(시·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 · 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 · 도무형문화재의 국가무형문화재로의 지정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려면 시 · 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시 · 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	① 시 · 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 · 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 ·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시 · 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시 ·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 ·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④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시 ·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시 · 도지사는 시 · 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관할구역 안의 시 · 도무형문화재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하였으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를 시 ·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 · 도무형문화재 또는 시 ·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 · 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49조(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국내외 특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승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 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내외 특허로부터 무형문화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진보된 지식 또는 기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전승자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록3] 시 · 도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지자체 조례의 주요 조항 모음

	주요 조례의 조항 및 내용
서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법 조례] 제8조(지정문화재) 시장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

	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제3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다. 1. 유형문화재 :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기념물 :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기념물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3. 민속문화재 :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민속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74조(준용규정) ①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2. 3., 2017. 11. 28., 2018. 12. 24.〉 ②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제1항·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5. 3. 27., 2018. 10. 16., 2019. 11. 26.〉 ③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 제3호, 제49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각각 "시·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각각 "시·도조례"로, "국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국가등록문화재"는 각각 "시·도등록문화재"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각각 "시·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문화재위원회"는 각각 "시·도문화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8. 12. 24.〉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에서 전승·유지되고 있는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문화재"란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여러 세대에 거쳐서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예술 등

	나.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 다.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라. 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마. 절기풍속(節氣風俗),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 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의례 등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수교육조교"란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보유자 중에서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역사성과 정체성 함양 2. 시의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3.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 ☐ 제17조(시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시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의 세부지표, 배점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시장은 시무형문화재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문화재가 시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시보에 30일 이상 예

	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4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부산	[부산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 제2조(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이하 "시지정문화재"라 한다)로 지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지정유형문화재(이하 "시지정유형문화재"라 한다), 부산광역시지정기념물(이하 "시지정기념물"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지정민속문화재(이하 "시지정민속문화재"라 한다)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문화재자료(이하 "시문화재자료"라 한다)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산광역시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1조의 부산광역시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무형문화재(이하 "시무형문화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구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 제15조(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기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지정문화재로,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지정문화재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문화재자료는 유형별로 나누지 않고 총괄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특히 도시화 과정에서 없어질 우려가 있는 1945년 이전에 건립된 건조물과 오래

	되지 않은 건조물이라도 향후 문화재로 보존할 필요가 인정되는 건조물을 문화재자료로 확대 지정할 수 있다. □ 제16조(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절차)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검토한 후 각각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 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시 공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4항에 따른 예고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의 무형문화재를 보전하고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3조(시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2조에 따라 시무형문화재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지정기준의 세부 지표와 배점 등에 관해서는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26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문화재가 시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대전	[대전 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4조(시지정문화재의 지정)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지정문화재를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및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법 제27조 및 제74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2. 적정성 검토 시기가 도래한 시지정문화재나 그 보호물·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③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4조(시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무형문화재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관해서는「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기준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시무형문화재를 지정하려면 제25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문화재가 시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시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의 세부기준, 배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주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 제13조(시지정문화재의 지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 ② 시지정문화재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 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광역시무형문화재(이하 “시무형문화재”라 한다)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문화재"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수교육조교"란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31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 제16조(시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무형문화재의 지정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시무형문화재를 지정하려면 제38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문화재가 시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내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울산	[울산 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 제2조(시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제목개정 2020. 8. 6.]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지정문화재(이하 "시지정문화재"라 한다)로 지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지정유형문화재(이하 "시지정유형문화재"라 한다), 울산광역시지정기념물(이하 "시지정기념물"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지정민속문화재(이하 "시지정민속문화재"라 한다)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지정문화재자료(이하 “시지정문화재자료”라 한다)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재나 시지정문화재자료를 지정하는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 등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전승·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울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역사성과 정체성 함양 2. 시의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3.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 제3장 시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유자의 인정 등 ☐ 제13조(시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시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의 세부지표, 배점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시무형문화재를 지정하려면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문화재가 시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울산광역시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4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경기도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토문화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07. 19., 2020. 07. 15.〉 ☐ 제2조(도지사의 책무 등) 〈개정 2016. 07. 19.〉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07. 19.] 〈개정 2020. 07. 15.〉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 ☐ 제18조(도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의 세부지표, 배점 등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려면 제29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문화재가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4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 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제19조(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기능・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다. 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나.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다.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2.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나.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다. 해당 무형문화재가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민법」제32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무형문화재"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충청남도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및 충청남도 등록문화재의 지정・해제 및 등록・말소,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0.〉 ☐ 제2조(정의) ① "충청남도 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라 한다)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크며,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10.〉 1.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 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개정 2020. 7. 10.〉 2. 기념물 : 다음의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옛무덤・조개무덤・성터・궁터・가마터・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로서 역사 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 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다.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지형, 지질, 광물, 동굴・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3. 민속문화재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② "문화재자료"란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④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관리 또는 원형대로 전승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관련 시설물을 말한다. ⑤ "충청남도 등록문화재"(이하 "도등록문화재"라 한다)란「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개정 2020. 7. 10.〉 ⑥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보유자·명예보유자·전수교육조교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유자"란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이하 "도무형문화재"라 한다)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유단체"란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도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3. "전수교육조교"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수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전승자"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명예보유자"란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 제3조(충청남도 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도무형문화재를 제21조에 따른 충청남도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를 "도무형문화재"로, "문화재청장"을 "도지사"로 본다. ③ 도지사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문화재가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의 세부 지표, 배점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충청북도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 제24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① 도지정문화재는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삭제 〈2018. 1. 11〉 ③ 삭제 〈2018. 1. 11〉 ④ 삭제 〈2018. 1. 11〉 ☐ 제26조(지정에 관한 자료 제출) 시장·군수는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을 때에는 사진, 도면과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지정 고시 및 통지) [제목개정 2018. 1. 11] ① 제24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 11〉 ②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지정, 전승자와 명예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문화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여러 세대에 거쳐서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예술 등 나.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 다.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라. 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마. 절기풍속(節氣風俗),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 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의례 등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수교육조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보유자 중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의 역사성과 정체성 함양 ☐ 제19조(도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도지사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제2조의 무형문화재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를 “도무형문화재”로, “문화재청장”을 “도지사”로 본다. ③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문화재가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4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의 세부 지표, 배점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강원도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15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또는 인정) ① 도지사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

	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만, 무형문화재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한다. 다만, 해당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과 단체가 있는 때에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람과 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승활동 기간과 실적, 공개행사와 전수교육 실적,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때에는 그 때부터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할 수 있다. ⑥ 이 조에서 인정하려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는 무형문화재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중 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 제16조(지정 또는 인정의 고시)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한 때에는 인정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인정된 사람과 단체에게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와 향토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① "도지정문화재"란 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유형의 문화재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지정한 무형의 문화재를 말한다. ② "문화재자료"란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도지사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 제15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또는 인정) ① 도지사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만, 무형문화재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한다. 다만, 해당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과 단체가 있는 때에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람과 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승활동 기간과 실적, 공개행사와 전수교육 실적,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때에는 그 때부터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할 수 있다. ⑥ 이 조에서 인정하려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는 무형문화재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중 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전라북도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 제8조(도지정문화재)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를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9조(지정절차)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조례 제42조에 따른 전라북도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 제2조(전라북도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전라북도무형문화재(이하 "도무형문화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관해서는「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기준을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려면 제27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해당 무형문화재가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의 세부지표, 배점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전라남도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 ☐ 제15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33조제2항의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28.) ④ 도지정문화재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문화재자료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가운데 원형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과정에서 인멸될 우려가 있는 오래되지 아니한 건조물이라도 향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③ 문화재자료는 유형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지정한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x
경상북도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 제3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① 경상북도지정문화재(이하"도지정문화재"라 한다)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도지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북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에서 전승·유지되고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여 도민의 문화적 향상과 정체성 제고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문화재"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여러 세대에 거쳐서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예술 등 나.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 다.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라. 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마. 절기풍속(節氣風俗),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 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의례 등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수교육조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보유자 중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9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경상남도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 제11조(도 지정문화재의 지정) ① 도 지정문화재는 도지사가 제2조제1항의 문화재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1999. 10. 11.〉 ② 도 지정문화재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 지정한다. 〈개정 2011. 08. 18.〉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5. 14.〉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인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때에는 그 때부터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 05. 16.〉〈개정 2009. 05. 14.〉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보호조례] ☐ 제17조(시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 무형문화재"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어 온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의 문화유산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14조(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에 관해서는「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기준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시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려면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조사 요청을 받은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문화재가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세종특별자치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 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⑦ 시 무형문화재의 지정의 세부기준, 배점 등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 제7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재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자료(이하 "도문화재자료"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도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도무형문화재의 종목명칭, 인적사항, 입문현황 등을 작성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3명 이상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 2. 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그 밖에 해당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⑤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인천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 제2조(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제2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이하 "시 지정문화재"라 한다)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6.〉 ② 시장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이하 "시 등록문화재"라 한다)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0. 2. 26.〉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5조, 제58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보유자·명예보유자·전수교육조교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이하 "시 무형문화재"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 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관해서는「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별표 1의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를 "시 무형문화재"로, "문화재청장"을 "시장"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제31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문화재가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인천광역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시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의 세부지표, 배점 등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참고문헌

김윤지,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가치의 재인식과 쟁점 모색」, 『문화와 융합』 38-3, 한국문화융합학회, 2016, 201-226면.

_____, 「한국무형문화재 관련 사전 편찬의 현황 및 방향」, 『민족문화연구』 8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 47-76면.

_____, 「공공성 관점으로 본 국가무형문화재 제도의 미래지향적 관점과 방향」, 『문화와 융합』 42-8,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827-847면.

노리코 아이카와-포레, 「우수성과 진정성 : 한국과 일본의 인간문화재 제도를 중심으로」, 『무형유산』 9, 국립민속박물관, 2014, 33-43면.

마크 제이콥스, 「브뢰겔과 버크가 주는 교훈,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패러다임에 내재된 암묵적 기준」, 『무형유산』 9, 국립민속박물관, 2014, 85-101면.

사라 사전트, 「고전마술(馬術)과 새로 등장한 공인된 무형문화유산담화의 위험성」, 『무형유산』 11, 국립민속박물관, 2016, 35-53면.

송 준,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소고—전형의 개념을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17, 남도민속학회, 2008, 217-241면.

올가비아로스톡키, 「거주하기 : 무형문화유산의 살아 있는 저장소로서 언어적 상호작용」, 『무형유산』 11, 국립민속박물관, 2017, 18면

이재필, 「국립무형유산원의 아카이브 현황과 향후 정책방안」, 『무형유산』 1, 국립무형유산원, 2017, 5-20면.

이푸・김상균・루오한마오, 「항저우 예술공예박물관 클러스터의 분쟁 해결 및 공동체 참여」, 『무형유산』 12, 2017, 국립민속박물관, 66면.

조린 네이링크, 「초다양성 시대의 무형문화유산: 변화의 길에 대한 연구」, 『무형유산』 12, 국립민속박물관, 2017, 195-198면.

Harriet Deacon & Rieks Smeets, "Authenticity, Value and Community Involvement in Heritage Management under the World Heritage and Intangible Heritage Conventions", *Heritage&Society*, Vol.6, 2013.

Laurajane Smith & Gary Campbell, "The Tautology of "Intangible Values" and the Misrecogni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ritage&Society*, Vol.10, 2017.

Sophia Labadi, "Intangible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ealistic Outcome or Wishful Thinking?", *Heritage&Society*, Vol.4, 2011.

【Abstract】

The Present Status and Future Objectives in Providing - Dictionary Knowledge of Kore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Focusing on Web Archives of Public Institutions—

Kim, Yun-Ji*

This study pursued to diagnose the present status concerning dictionary knowledge of Kore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provided on the web archives of public institutions and to find practical ways to accurately provide dictionary knowledge of Kore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finition, category, classification and direction of dictionary knowledge were examined through understanding the current laws relating to Kore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However, except for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several local governments, the definition and standard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have been still provided without applying the current laws, and basic explanations of information on the web archives have been missing, or errors presented as incorrect figures have been found. The recently amended laws and systems should be identified, and the definitions, types, targets, and contents should be quickly revised in applying the amendments.

Second, investigating the causes of these limitations, the reason was revealed to be the combination of the uniqu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the evolutionary natures of intangible heritages and the public institutions' system that frequently replaced staff in charge as well as administrative affairs.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ationally-integrated knowledge archive of Korea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with balance, unity, completeness, connectivity and comprehensiveness. Also, the knowledge provided by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 Expert Committee for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t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irected towards an archive dam completed with a process of knowledge provision through a systematic procedure, at least complying the directions of publicity with public interest, openness, normativity and value as well as the principles of accuracy, reliability, objectivity and fairness, which would be the fundamentals of providing dictionary knowledg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lea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ly-integrated database with value, public interest, openness and normativity.

Keywords: Kore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ictionary,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oc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chive.

접수일: 2021.03.31. ‖ 심사일: 2021.04.16. ‖ 게재확정일: 2021.05.11.